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22. 위성락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7. 23.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3.)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12.3.)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5.12.3.)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위성락의원)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의 수집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안 제9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현재 국제안보환경은 우방국 간에도 치열하게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 만큼 다원화되어 국가의 외적 안전이 반드시 적국에 의해서만 침해받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간첩죄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기밀 탐지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됨.

다만, 개정안은 ‘적국’ 개념의 삭제와 관련하여, 현행 간첩죄의 ‘적국’ 개념을 삭제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바, 현행법은 ‘외환의 죄’ 장에서 ‘외국’과 ‘적국’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위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